

#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 서류접수기간

신청 방법 / 당첨자 및 등·호수 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은행 구분 없음</li> <li>· 당첨자 및 등·호 발표일 : <b>2021.10.21(목)</b></li> </ul>	<p><b>2021.10.22(금) ~ 2021.10.31(일) (10:00 ~ 16:00)</b></p> <p>당사 견본주택 : 강릉시 교동 30번지</p>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허용 (방문접수시간 : 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당첨자 확인 방법,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 청약자격 및 요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강릉시) 및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으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동일인과 재혼시 처음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4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단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에 한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출산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 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경쟁시	1순위	1)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2)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3) 혼인 신고 이전 출산 자녀(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포함
	2순위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 12. 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기타사항		2018. 05. 04.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게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일반 공급 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 경쟁 시 동일 적용)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강릉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 ①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함.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②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③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 소득기준 안내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 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 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공 통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일반 근로자 1)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확인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	1) 해당직장 2)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1), 2) 해당직장
	전년도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1)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급여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 사업자	1)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2) 법인등기부등본	1) 세무서 2)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소득금액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 사업자 등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1)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2)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해당직장/세무서 2)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1)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1)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급여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자급여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2) 1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1) 해당직장 2)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1)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 비치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09.30. 이후 발행분]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 까지로 설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청약통장상위 확인서		• 인터넷 청약(청약 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증빙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시(등본 미기재시)	
신혼 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 요건 확인서(건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청시(대리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발급 서류에 한함)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제출시(본인작성 위임장에 한함)
	○		주민등록증, 인장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부적격		○	부적격 소명서류	본인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임
- ※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상기 서류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서류접수 및 계약이후라도 주택소유 등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첨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